

『구미추모공원(가칭) 관리·운영 위탁 동의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11월 17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11월 17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12월 21일

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 최 윤 구

나. 제안이유

-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건립중인 구미추모공원(가칭)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이용 시민들에게 최상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위탁재산현황

- 시 설 명 : 구미추모공원(가칭)
- 위 치 : 옥성면 농소리 산 77-1번지 일원
- 시설규모 : 대지면적 32,691㎡, 연면적 7,397㎡(지하1/지상3)
※ 부지 137,821㎡(화장시설 111,854㎡, 도로 25,967㎡)
- 사 업 비 : 27,300백만원(국8,537 도1,829 시16,934)
- 사업기간 : 2012년~2016년(5년)

- 주요시설 : 화장로 5기(8기 규모), 진입도로 805m, 주차장 126대
 - 1층 : 화장로, 홍보갤러리, 고별실, 안치실, 안내실
 - 2층 : 유족대기실, 식당·매점, 카페테리아
 - 3층 : 옥상정원, 태양광발전시설 등

○ 위탁기관 : 구미시설공단

○ 위탁기간 : 5년 이내

○ 운영 소요예산 : 연 1,423백만원 정도

(단위 : 백만원)

계	인건비	경비	공공요금 및 소모품비	민간위탁비 (청소용역 등)	비고
1,423	689	375	277	82	

※ 상기 운영비는 시립화장시설 운영·관리 계획수립 연구용역 결과 추정치며 2016년 1분기 중 원가분석 후 운영비 재 산정 예정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
-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 제4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인 엽

○ 본 동의안은

- 옥성면 농소리에 건립중인 구미추모공원(가칭)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해 구미시설공단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2016년도 상반기 준공, 하반기 개장하게 될 구미추모공원(가칭)의 위탁을 결정하여, 시험 운전 및 전문화된 인력과 경영기법 투입으로 안정적 운영을 통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.

○ 검토결과

본 동의안은

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의 사무위임 규정과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 촉진및관리조례」 제4조 규정에 의거 구미추모공원(가칭)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탁동의안으로 구미추모공원(가칭)은 공정률 51%(‘15.12.11기준)로 향후 화장로 설치, 장사운영 시스템 구축, 화장로 시험가동을 통해 2016년 상반기에 준공하여 2016년 하반기에 개장할 예정으로 위탁 시 안정적인 화장시설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, 전문화된 인력 투입과 질 높은 서비스로 명품도시 구미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42만 시민에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. 참고로 도내 시설관리공단인 설립된 23개 시·군구 중 20개 시·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음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토론요지 : 생략
- 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-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